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733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우

피 고 B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2020. 9. 9.까지는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11. 8. 29. 설립된 회사 로, 2011. 9.경 C 주식회사에게 아산시 D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2억 원에 도급하고, E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민원 및 인허가문제 처리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맡을 사람을 찾 던 중 E으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피고가 이 사건공사를 맡아 5억 원 가량에 완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대한 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경부터 각 공정별로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하도 록 하고, 수시로 E을 통해 원고에게 공사비용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억 4,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명 목
1	2012. 1. 21.	5,000,000	사무집기, 목공자재 구입비
2	2012. 1. 30.	8,500,000	목공팀 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기타 경비
3	2012. 1. 31.	6,500,000	
4	2012. 2. 8.	10,000,000	숙식비, 경비, 경량부속자재 구입비
5	2012. 2. 24.	100,000,000	목공 및 경량팀 인건비, 자재 구입 비, 전기공사 하도급 기성
6	2012. 3. 2.	38,600,000	
7	2012. 3. 9.	70,500,000	목공 및 경량팀 인건비, 자재구입비
8	2012. 3. 14.	30,000,000	
9	2012. 3. 22.	65,000,000	목공 및 경량팀 인건비, 자재구입비, 기타 경비
10	2012. 4. 3.	10,000,000	
	합계	344,100,000	

라. 피고는 원고가 공사내역서, 비용산출서 등의 자료를 요구하면서 피고의 추가 금 원 지급 요구를

거절하자 2012. 4. 13.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피고의 직원으로이 사건 공사를 담당한 F이 공사비 내역을 정리한 공사시공내역서에는 2012. 4. 13.경까지이 사건 공사 과정에 발생한 공사비가 합계 238,986,270원으로 집계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6. 15.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3596호로 원고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4. 28.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단781,1855(병합)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5. 5. 15. ① E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 도급계약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② 위조된 위 도급계약서 등을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사기미수), ③ 허위의 유치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공사 업무를방해하였다(업무방해)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가 시공한 부분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는238,986,270원을 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중105,113,730원(=344,100,000원 - 238,986,27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된다,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05,113,7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공사비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공사 중단일 다음날인 2012. 4. 14.부터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20. 9.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지선